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 상
지원대상아동 추가》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70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제221787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 상 지원대상아동 추가 (안 제3조의2제2항)	3

I.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제221787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3. 30.

다. 회 부 일 : 2026. 3.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주거지원필요계층(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은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자녀 가구 외의 아동가구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일상 및 발달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달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3. 검토의견

가.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 상 지원대상아동 추가 (안 제3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① (생략)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 <u>신혼부부</u>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 ----- <u>신혼부부·지원대상아동</u>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 -----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현행법에서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주거지원필요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주거지원필요계층 대상에 「아동복지법」 상 지원대상아동²⁾(이하 “지원대상아동”이라 한다)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아동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함.

이와 관련하여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³⁾에서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기본법」 상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도 지원대상아동의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도 공공임대 유형별로 지원

2)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대상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지원대상아동 공공임대 공급 현황 】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임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일반공공임대	우선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청년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장 ·자립준비청년 ·주거취약계층 ·재난유자녀가정
	일반공급	·한부모가족, ·아동시설 퇴소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저소득층(50%이하)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며, 주택 유형별 세부 공급비율은 시행규칙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4